

동아리 운영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18장 학생활동과 관련하여 학생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단체란 본교 총학생회 부서 산하에 있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체 그리고 이에 준하는 단체를 총칭한다.

제3조(등록요건) 단체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 교육 이념과 신학적으로 부합해야 한다.
2. 단체의 설비 취지와 이념에 찬동하는 15명 이상의 명부와 입회원서를 첨부한다.
3. 지도교수는 씨클 및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대하고 학생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부정적이며 건전하지 못하여 대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단체는 등록을 불허한다.

제4조(등록절차) 등록은 신규등록과 재등록으로 구분하며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등록 : 단체로서의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구비서류를 각 2부 첨부한 후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학생과에 제출한다.
 - 가. 단체 등록 신청서 (소정 양식)
 - 나. 지도교수 추천서
 - 다. 회칙
 - 라. 활동 계획서 및 예산안(소정양식)
 - 마. 발기인의 명단과 발기인의 총회 회의록
2. 재등록
 - 가. 단체등록 신청서(소정양식)
 - 나. 회칙
 - 다. 임원 및 회원 명단과 입회원서
 - 라. 전년도 활동계획 및 결산보고서
 - 마. 신년도 활동계획 및 예산서
 - 바. 이상의 구비서류에 대한 지도교수의 의견서

제5조(승인) 본 규정 제4조에 의거 단체 등록 신청을 마친 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처장이 공고한 때로부터 단체로 인정된다.

제6조(보고) 각 단체는 회칙에 의거하여 자율적으로 임원을 선출하되 그 명단은 단체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내에 총학생회를 경유 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본교 전임 교원 중에서 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후 총장이 승인한다.

- ② 지도교수는 해당단체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 단체의 활동을 책임지도 하여야 한다.
- ③ 지도교수가 해외연수나 출장 기타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단체를 지도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기본 품의서에 타교수로 하여금 대리지도를 위촉하여 학생처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단체가 지도교수를 추대할 때는 지도교수의 전공, 부전공 기타 취미 활동이 해당단체

의 활동내용과 부합되는 전임교수로 한다.

제8조(재정 및 시설지원) ① 단체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회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에 재정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처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② 학생처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창작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학생의 본분에 일치하며 면학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여부
2. 전교생에 대한 학술적, 기술적, 교육적, 신앙적 공헌여부
3. 전년도 활동실적 여부

③ 단체의 성격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재정지원을 취소·감액할 수 있다.

1. 해당단체의 구성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단체
2. 타 대학과의 연합 씨클이나 본교 단체의 특수성이 없는 단체
3. 단일 학부 학과나 혹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구성되는 단체
4. 대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며 건전하지 못한 단체
5. 과거 일년간의 활동실적이 미진한 단체
6. 활동실적보고 및 결산보고를 하지 않는 단체
7. 씨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단체
8. 학교 행사에 불참, 비 협조하는 단체
9. 학교 제 규정을 준수치 않는 단체

④ 단체의 재정은 원칙적으로 소속단체의 전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매 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를 경유 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활동) ① 등록된 단체는 학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모든 행사에는 집회 신고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행사가 정상수업과 중복될 경우 지도교수와 전공 학과장의 수업처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야간옥외 집회는 학교환경보호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는다. 단, 부득이 옥외집회를 할 경우 지도교수의 의견서가 첨부 제출되어야 하며 학생처장의 허가를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야간 집회시 불꽃놀이, 횃불, 모닥불 등을 피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생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게시물, 현수막, 프로그램 티켓, 기타 유인물의 제작은 초안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또는 전공 주임교수와 학생처장의 허가를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인쇄물을 배포코자 할 경우 인쇄물 배포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배포할 수 있다.

⑦ 모든 게시물은 소정규격 1호(2절 이하)와 2호(2절지)로 한정하고 학생처장의 허가를 받은 후 게시판에 부착한다.

⑧ 매학기 중간 또는 기말(전교생 실시 시험 포함) 고사개시 10일전부터 시험 종료까지 각 단체의 행사(집회)는 허가되지 않는다. 각 단체는 각 행사의 완료 후 5일 이내에 결산 및 활동보고서를 지도교수 경유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총학생회의 회비보조를 받은 행사인 경우에는 총학생회장에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집회신고서의 제출절차)

① 전공학과 단위의 학생 행사

1. 행사 및 집회 신고서는 해당 전공학과장이 원안 결재를 총장의 승인 을 받은 후 학생처장에게 제출한다.

2. 총학생회비의 보조를 요청할 때에는 총학생회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써클 단체의 학생행사

1. 써클 대표자는 지도교수로부터 행사 및 집회허가원의 승인을 받아 총학생회를 경유 학생처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집회신고서 제출가입 및 구비서류) ① 정기집회(월례 및 총회) 및 단체의 운영에 관련된 일반집회는 3일전에 정회 신고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예술 및 체육행사는 행사개최 10일전에 행사 내용 개요, 예산관계, 대본 및 주제내용의 요약, 지도교수 의견서, 홍보물의 제작과 그 배부관계에 관련한 허가원을 첨부하여 집회 신고서를 학생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타 대학이나 다른 기관과의 연합 행사인 경우에는 14일전에 행사개최의 취지와 목적, 행사내용 설명서, 예산서, 참가교 동의서 및 참가인원, 홍보물 제작 배부 허가원을 첨부하여 집회 신고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직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간행물의 발간허가 신청) ① 학칙 제61조에 의거 재학생이 발간하는 정기·부정기의 간행물은 인쇄물발간 허가원을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행물의 편집, 인쇄 및 배부 등 자세한 것은 총학생회의 규칙에 따른다.

제13조(봉사활동) ① 봉사활동은 방학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봉사활동을 실시코자 하는 단체는 방학시작 30일전에 다음의 구비서류 갖추어 지도교수를 경유,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봉사활동 계획서
2. 예산 계획서
3. 참가 학생의 명단

③ 봉사활동의 참가하는 단원 수는 20명 이상 봉사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봉사활동을 완료한 단체는 봉사활동 결과 보고서, 결산서, 자체평가서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단체의 등록 취소) ① 등록된 단체로서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단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총학생회의 규칙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경우
2. 대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며 건전하지 못한 활동을 할 경우
3. 학교행사에 불참 비협조적인 경우
4. 본교 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5. 지도교수의 사임서 수리 후 14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제15조(단체의 해산) 재 등록시 등록을 하지 않은 단체는 학생등록 마감일 이후 자동해제로 간주한다.

제16조(단체활동의 잠정적 중지) 졸업위원회 등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체는 (앨범제작) 업무가 끝나면 물품의 납품과 함께 다음의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지 또는 해산한다.

제17조(본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을 폐기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학생회 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1998년 3월부터 실시한다.